

청탁금지법 상담기록부

상담일시	2018. 9.	상담장소	감사담당관실
신청자	르르르	상담자	청탁방지담당관
상담유형	부정청탁 / 금품수수 / 외부강의 / 기타		
상담내용	<p>(질의)</p> <p>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 반환한 경우에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</p> <p>(답변)</p> <p>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9조 제1항,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(법 제22조 제1항 제1호) 또는 과태료(법 제23조 제5항 제1호)가 부과됩니다.</p> <p>한편,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(법 제9조 제1항 제1호),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(법 제21조).</p> <p>따라서,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/p>		
비 고			